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76호

2. 발 의 자 : 이 희 원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8월 7일

5.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Ⅱ.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 7월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으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원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한편, 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정기회 개최 횟수를 조정하여 자율성과 효과성, 적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정기회 개최 횟수에 대한 개정을 통해 각 종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3조 제1항)
- '여성가족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을 「교육담당 국장」과 같이
 '여성가족담당 실장', '도시계획 담당 본부장'으로 각각 변경함
 (안 제3조 제3항 제2호)
- '안건 제출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안건 협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제4호)
- 협의회 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정기회의 횟수를 '매년 2회'에 서 '매년 1회' 개최로 개정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활용하여 행정 부담 경감 및 적법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6조 제2항)

Ⅳ. 관련법령

- 1.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3. 입법예고 : 2024. 8. 20. ~ 8. 24.(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7일 이희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976호로 발의되어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위원명(직제 등)을 변경하고 위원 구성 및 정기회 개최 횟수 등을 조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서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41조1))되어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에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 금번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조직개편(2024년 1월,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2024년 7월)에 따른 행정협의회 위원명(직제 등)을 현실화시키고 정기회 개최 횟수를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행정협의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 제 고 측면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협의회 구성(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제1항 검토
- 먼저 안 제3조제1항은 회의에 참석하는 행정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시, 사안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 현재 행정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 국장, 평생진로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구성되고, 서울시는 시장, 기 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계획국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1] 지자체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교육청, 시·도청)

구 분	직위(직책)	
	교육감(공동의장)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시출득 글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시장(공동의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계획국장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 또한 교육행정협의회는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 학교설립 및 학교시

설, 평생교육, 교육시설 개방, 과학 기술교육 관련, 학교급식, 재 난 안전관리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 관하여 협의·조정하는 기 능을 하도록 규정(제2조²))되어 있는바,

안 제3조제1항이 행정협의회 사안에 따라 담당 실·국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참석 위원의 구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행정협의회의 기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제3항제2호 검토

- 다음으로 안 제3조제3항제2호는 2024년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라 협의회 위원 중 '여성가족 정책실장'을 '여성가족담당 실장'으로,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계획담당 본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4년 1월에 '도시계획국'을 '도시공 간본부'로³⁾, 2024년 7월에는 '여성가족정책실'을 '여성가족 실'로 조직을 개편하였는바⁴⁾,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2)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전입)금 규모와 전출(전입) 시기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9.}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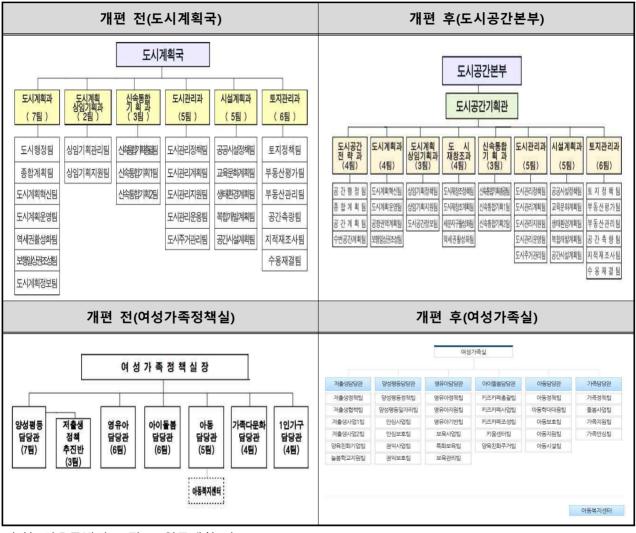
^{14.}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4.7.1.][서울특별시규칙 제4641호, 2024.6.28., 일부개정]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 2024.1.1.][서울특별시조례 제9078호, 2023.12.29., 일부개정]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안 제3조제3항제2호는 '여성가족 정책실 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 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림-1]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개편 전·후 현황



*출처: 서울특별시 조직도, 업무계획 자료

○ 그러나 '여성가족실장' 및 '도시공간본부장'등 직위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서 규칙사항을 조례에서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 명칭을 부서명이 아니라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매번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해 입법 경제상 실익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안 제3조제3항제2호는 법령의 위계체계 및 입법 경제적 측면 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제3항제4호 검토

- 마지막으로 안 제3조제3항제4호는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안건 제출 담당 과장'을 추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 제10조5)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서울시 사이에 실무협의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고, 실무협의 위원장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서울시 '교육담당 국장', 실무위원으로는 '교육청 및 시의 관련 부서의 담당 과장(담당관)' 및 '교육협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안 제3조제3항제4호에 '안건 제출 담당 과장'을 추가할 경우, 실무협의회 위원 중 '교육협력관'만 제외하고 모든 실무협의회 위원이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와 행정협의회와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무협의회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더욱이 위원회 구성은 위원의 발언과 표결에 있어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을 유사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나 대등한 대표성을 가진 사 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행정협의회 위원으

^{5)「}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선정, 그 밖의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시 교육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관련부서의 담당 과장(담당관)과 교육협력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로 교육감 및 시장이 포함된 상황에서 과장급을 같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원 간 불균형과 직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동 조례 제7조⁶⁾를 살펴보면,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주체는 교육감 및 시장인바, 안 제3조제3항제4호에 '안건 제출 담당 과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담당 과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회의운영(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는 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 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행정협의회는 조례 규정상 정기회의를 2회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만 개최되었고, 회의 안건은 2021년 유치원무상급식을 제외하고 는 매년 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예산 관련 안건이었습니다.

[표-2] 최근 5년간(2019~2023년) 서울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결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 시	'19.10.10.(목),	'20.10.8.(목),	'21.10.6.(수),	'22.10.6.(목),	′23.10.6.(금),
	16:00~17:00	16:00~17:00	15:00~16:30	15:00~16:00	10:00~11:00
참석자	위원, 관련부서장,	위원, 관련 부서	위원, 관련 부서	위원, 관련 부서	위원,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등 12	장, 관계 공무원등	장, 관계 공무원등	장, 관계 공무원등	장, 관계 공무원등
	명	14명	16명	13명	8명
회의 안건	1) 2020년 일반	1) 2020년도 법	1) 2022년 법정	1) 2023년 법정	1) 2024년 법정
	회계 전입금	정 전입금 세	전입금 세출예	전입금 세출예	전입금 세출예
	예산편성	출예산편성 협	산 편성안	산 편성 협의안	산 편성 협의안

^{6)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안건의 제출) 교육감 및 시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 조례상 전출	의안	2) 교육경비보조	2) 교육경비 보	2) 교육경비 보
	금 상향 요구	2) 교육경비보조	금 안정적 지	조금 안정적	조금 지원 요
	(보통세의	금 전 출율 상	원 요청(협의)	지원 요청	청 협의안
	0.4%→0.6%)	향 요구(보통	3) 유치원 무상		
		세의 0.25%→	급식 분담항목		
		0.6%)	및 비율 협의안		

*출처: 서울시교육청 회의결과 제출자료

- 이처럼 행정협의회 개최가 매년 1회에 그치는 것은 이미 서울시교육 청 및 서울시에 각종 교육지원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바, 다양한 교육 사안 협의를 위해 행정협의회의 정기회의 등을 반드시 개최할 필요성은 낮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동 조례 제6조제2항7)에 따라 행정협의회는 정기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협의 회의 정기회 개최를 현실에 맞게 매년 2회에서 1회로 수정하는 것은 행정협의회 개최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재 행정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교육경비보 조금 등 서울시와 관련된 예산 협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원 금 액은 해마다 감소하여 2024년에는 입학준비금만 편성되어 있는 상 황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등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u>임시회의는 필요</u> <u>에 따라 개최한다</u>.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 8. 21.).
- □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